
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,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 적용이 어려워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(안 3-9-5. (4))

건축물의 높이(층수)는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개선

### 3. 의견제출

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
○ 팩스 : 044-201-5569

○ 전자우편 : sungsm79@korea.kr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<정책자료> <법령정보> <입법예고·행정예고>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044-201-3718, 47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